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두8522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주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경영간섭’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

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고 운영의 \*\*\*\*\*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 운영의 ○○○○○○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테코 등 85개 납품업체(122개 상표, 2006. 5. 기준)들로부터 ○○○○○○의 이디아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같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평소 ○○○○○○의 이디아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 대비 ○○○○○○의 매출비중이 높거나 50% 이상(\*\*\*\*\*에서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에서 실현하고 있는 경우)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납품업체로서는 영업 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납품업체들이 원고에게 ○○○○○○의 이디아이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



대법관 신영철 \_\_\_\_\_